

#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4월 12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4월 1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4월 22일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총무과장 남상수)

### □ 제안이유

-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의 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,
- 일자리지원, 저탄소 녹색성장,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신규 사무 발생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과 신설: 1과

-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

나. 팀 소속(명칭) 변경: 3팀

-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안정팀 → 일자리정책과 고용정책팀
-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지원팀 →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
-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→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

다. 팀 명칭 변경: 2팀

-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→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
-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→ 환경보전과 녹색성장팀

라. 정원조정 현황

- 기관별 정원조정

구 분	계	집 행 기 관						의회
		소계	본청	직속기관	사업소	구청	동	
현정원	2,085	2,053	764	146	266	484	393	32
조정후	2,089	2,057	768	146	266	484	393	32
증·감	+4	+4	+4	-	-	-	-	-

- 종류별 정원조정

구 분		계	일반직 (연구직·지도직 포함)	기능직	별정직,정무직
법 정	비율	100%	78%이상	20%이내	2%이내
기 준	인원수	2,089	1,629이상	418이내	42이내
현정원		2,085	1,752	323	10
조정후		2,089	1,756	323	10
법정기준대비율		100%	84%	15.5%	0.5%

- 직급별 정원조정

·일반직

구 분		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법 정 기 준	비율	100%	1%이내	7%이내	24%이내	32%이내	24%이내	12%이 상
	인원수	1,746	17이내	122이내	419이내	559이 내	419이내	210이상
현 정 원		1,742	13	112	398	554	405	260
조 정 후		1,746	13	113	398	554	406	262
법 정 기 준 대 비 비 율		100%	0.7%	6.5%	22.8%	31.7%	23.3%	15%

·기능직

구 분		계	6급	7급	8급	9급	10급
법정 기준	비 율	100%	4%이내	14%이내	20%이내	30%이내	32%이상
	인원수	323	13이내	45이내	65이내	97이내	103이상
현정원		323	11	42	63	92	115
조정후		323	11	42	63	92	115
법정기준대비율		100%	3.4%	13.0%	19.4%	28.4%	35.8%

·연구, 지도직

구 분		연구직		지도직	
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법정 기준	비 율	3%이내	97%이상	6%이내	94%이상
	인원수		2		8
현정원			2		8
조정후			2		8
법정기준 대 비 율			100%		100%

·정무직: 1명

·별정직

구 분		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법정 기준	비 율	100%	7%이내	34%이내	39%이내	18%이내	2%이상
	인원수	9	1	3	3	2	
현 정 원		9	1	3	5		
조 정 후		9	1	3	5		
법정기준대비율		100%	11.1%	33.3%	55.6%		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질의답변과 같음. (병합심사)	

### 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2,085명”을 “2,08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,053명”을 “2,05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 계	<u>2,089</u>	<u>2,089</u>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 장	1	1					
일반직 계	<u>1,746</u>	<u>1,746</u>					
2급	1	1					
4급	12	5	1	1	2	3	
5급	113	33	3	11	10	19	37
6급 이하	<u>1,620</u>	<u>1,620</u>					
별정직 계	9	9					
5급상당	1				1		
6급상당 이하	8	8					
연구직 계	2	2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2	2					
지도직 계	8	8					
지도관							
지도사	8	8					
기능직 계	<u>323</u>	<u>323</u>					

#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81호
의결년월일	2010. 4. 26 (제160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4. 1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의 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,
- 일자리지원, 저탄소 녹색성장,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신규 사무발생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가. 과 신설: 1과

-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

나. 팀 소속(명칭) 변경: 3팀

-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안정팀 → 일자리정책과 고용정책팀
-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지원팀 →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
- 지역경제과 노사협력팀 →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

다. 팀 명칭 변경: 2팀

-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→ 주민생활지원과 무한돌봄팀
- 환경보전과 대기관리팀 → 환경보전과 녹색성장팀

라. 정원조정 현황

- 기관별 정원조정

구 분	계	집 행 기 관						의회
		소계	본청	직속기관	사업소	구청	동	
현정원	2,085	2,053	764	146	266	484	393	32
조정후	2,089	2,057	768	146	266	484	393	32
증·감	+ 4	+ 4	+ 4	-	-	-	-	-

○ 종류별 정원조정

구 분		계	일반직 (연구직·지도직 포함)	기능직	별정직,정무직
법 정 기 준	비율	100%	78%이상	20%이내	2%이내
	인원수	2,089	1,629이상	418이내	42이내
현정원		2,085	1,752	323	10
조정후		2,089	1,756	323	10
법정기준대비율		100%	84%	15.5%	0.5%

○ 직급별 정원조정

• 일반직

구 분		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법 정 기 준	비율	100%	1%이내	7%이내	24%이내	32%이내	24%이내	12%이상
	인원수	1,746	17이내	122이내	419이내	559이내	419이내	210이상
현정원		1,742	13	112	398	554	405	260
조정후		1,746	13	113	398	554	406	262
법정기준 대비비율		100%	0.7%	6.5%	22.8%	31.7%	23.3%	15%



• 기능직

구 분		계	6급	7급	8급	9급	10급
법정 기준	비 율	100%	4%이내	14%이내	20%이내	30%이내	32%이상
	인원수	323	13이내	45이내	65이내	97이내	103이상
현정원		323	11	42	63	92	115
조정후		323	11	42	63	92	115
법정기준대비율		100%	3.4%	13.0%	19.4%	28.4%	35.8%

• 연구, 지도직

구 분		연구직		지도직	
	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법정 기준	비 율	3%이내	97%이상	6%이내	94%이상
	인원수		2		8
현정원			2		8
조정후			2		8
법정기준 대 비 율			100%		100%

• 정무직: 1명

• 별정직

구 분		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법정 기준	비 율	100%	7%이내	34%이내	39%이내	18%이내	2%이상
	인원수	9	1	3	3	2	
현 정 원		9	1	3	5		
조 정 후		9	1	3	5		
법정기준대비율		100%	11.1%	33.3%	55.6%		

##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2,085명”을 “2,08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,053명”을 “2,05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별지”

[별표 3]

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**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 계	<u>2,089</u>	<u>2,089</u>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 장	1	1					
일반직 계	<u>1,746</u>	<u>1,746</u>					
2급	1	1					
4급	12	5	1	1	2	3	
5급	113	33	3	11	10	19	37
6급 이하	<u>1,620</u>	<u>1,620</u>					
별정직 계	9	9					
5급상당	1				1		
6급상당 이하	8	8					
연구직 계	2	2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2	2					
지도직 계	8	8					
지도관							
지도사	8	8					
기능직 계	<u>323</u>	<u>323</u>					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<u>2,085명</u>이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: <u>2,053명</u></p> <p>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32명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제2조(정원의 총수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--- <u>2,089명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. ----- : <u>2,057명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p>